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52

발의연월일: 2024. 10. 17.

발 의 자: 민형배ㆍ이개호ㆍ김문수

안도걸 · 소병훈 · 주철현

박홍배 · 김용민 · 박균택

이정문 • 전용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등을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려 합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행정의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교육부도 지난 9월 26일, 설치 등의권한의 지방이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 니다. 교육부장관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명칭과 위치 등을 정합니다. 그동안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의 실효성 부족이 누차 지적됐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른 교육서비스 급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교육현장 밀접지원에 한계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최근에는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등 현안 신속대응력 부족도 제기됩니다. 특히, 2개 이상의 자치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경기 화성, 오산지역입

니다. 과밀학급과 원거리통학 등 현안해결에 별도 교육지원청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교육청은 찬성하는데, 교육부가 적극적이지 않아 번번 이 설치가 좌절됐습니다. 법 개정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 명칭과 조직 · 운영 등을 시 · 도 교육 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은 필요한 경 우, 주민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교육 현장 수요에 밀착지원 강화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4조 및 제35조).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시·도조례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시·도조례로"로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다.

제35조제1호 중 "지도"를 "지원과 지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②		
명칭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한다.	시·도조례로		
<u><신 설></u>	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민, 학부모 등의 의		
	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		
	·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u> </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u>	<u>\lambda</u>		
<u>통령령으로</u> 정한다.	<u>·도조례로</u>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			
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	1		
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u>지도</u> ·감독	<u>지원과 지도</u>		

2. (생략)

2. (현행과 같음)